

## 충청북도증평출장소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제안년월일 : 2001. 8. 22.

제안자 : 유주열 의원외

### 1. 수정이유

현실에 맞지 않는 위원회 구성관련 조항을 수정하고자 함.

### 2. 수정 주요골자

- 제2조 제2항 중 단서조항 삭제

## 충청북도증평출장소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충청북도증평출장소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(구성) 제2항 중 단서조항을 삭제한다.

## 조 문 대 비 표

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2조(구성) ①(생략)</p> <p>② 위원장은 출장소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,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재무과장이 그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<u>다만, 제3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에서 달리 정하고 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관련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</u></p>	<p>제2조(구성) ①(생략)</p> <p>② 위원장은 출장소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,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재무과장이 그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(삭제)</p>